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2021. 11. 30.)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국 모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129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11월 17일(수)

2. 제출사유

마포구 출판 산업의 발전과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조성된 경의선 책거리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경의선 책거리 운영 사무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10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 위탁의 필요성
 - 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동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예술 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과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경의선 책거리 운영사무의 전부

- 경의선 책거리 관리 및 운영
- 경의선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경의선 책거리를 거점으로 하는 도서 관련 기획사업
- 시설물 및 장비 관리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4 일대
- 규모: 면적 6,411㎡, 연장 250m, 장폭 39m, 단폭 24m
- 지원시설: 부스 9개 동 및 운영 사무소 등

마. 위탁기간: 2022.4.1. ~ 2024. 12.31.(2년 9개월)

바.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연 5억 원

4.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설립, 시행하는 ‘경의선 책거리’ 사업을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성,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책을 통한 다양한 독서진흥 및 관련 문화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동 사업 내용을 보건데 사업의 효과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요구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고 있어 동 사업의 민간위탁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소기의 행정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의 설립 및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경의선 책거리 조성시기는 2016년 4월이며 이후 마포구는 동 시설의 운영을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최초 위탁하였고 2019년 현 위탁기관인 “(사)한국작가회의”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제1항은 “구청장은 …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없이 시행함.
- 단체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해당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법령의 입법목적은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자 선정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이러한 법령의 위반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 추진 경위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 사유에 대한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